

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의 목적 (제 54조)

- ①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③ 시설과 입소자,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2. 계약의 기간 (제 55조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.
- ④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
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- ⑤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0. 09. 17>

3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(제 56조)

-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서

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② 입소보호 이용계약(서약)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 (기관 주체, 서비스 이용자, 서비스 이용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약 및 종료, 급여비용, 비용수납, 통지할 사항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계약사항 확인 및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.

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④ 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. 7

⑥ 계약서 부분 발부 - 입소계약서(급여계약서)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의 부분 제공내용을 쌍방 확인 서명하는 것으로써 부분발급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.

4. 급여비용/ 이용료 (제 57조)

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 제 40조에 따른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이 정한다.

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.

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
1. 식재료비 / 간식비
2. 이,미용비
3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
◆ 시설급여 (1일) - 2023년 1월 1일 기준

구분		1등급	2등급	3-5등급
요양 급여	(입소자 2.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상 배치)	81.750원	75.840원	71.620원
	(입소자 2.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상 배치)	78.250원	72.600원	66.950원
비급여	상급병상료 (1인실)	10.000원		
	상급병상료 (2인실)	7.000원		
	식재료비 (1식)	3.600 원 * 3식 = 10.800원		
	간식비 (1회)	1.500원 * 1식 = 1.500원		

4.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
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,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, 간병·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, 일상동작훈련, 기능훈련,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사정하지 아니한다.

5. 급여비용부담금 청구 및 납부 (제 58조)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

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
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 적용한다.

④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 선 납부하기로 한다. (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
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(이하 외박비용) 하되 1회 당 10일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기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원하는 경우 외박수가의 100%를 본인이 부담한다.

⑤ 입소 시설의 급여비용은 입, 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%,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%만 산정한다.

⑥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 (제 59조)

① 신원인수인 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4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.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8 서비스 해지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기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10.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② 신원인수인 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의무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6. 계약의 해지 (제 60조)

① “갑”의 해지

1. “갑과 “병”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 4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에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1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.
- 가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나. 2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
 - 다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
 - 라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마. 장기간이 부재로 ‘갑’이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
 - 바. 어르신 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사.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-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, 불이행 시에는 강제로 퇴소조치 한다.

7. 퇴소 및 입소비의 반환 (제 61조)

- ① ‘을’은 제 5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지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과 ‘병’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을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.
-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 (또는 갑 ‘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 (또는 ‘병’)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.

④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
8. 면회 및 외출·외박 (제 62조)

- ① “갑”의 면회시간은 매일 9:00 시부터 18:00 까지로 한다.
(단, 갑과 “을” 또는 “병”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)
- ② “갑”은 외출·외박 시 사전에 “을”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.
- ③ “을”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 “갑”이나 “병”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“을”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“갑”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“갑” 또는 “병”은 “을”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9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(제 63조)

-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, 시설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, 추가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